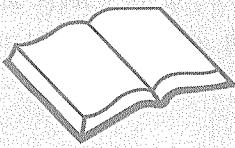


##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 저작권(법)은 동네 북?



최성일\*

책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참으로 난감하다.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 책을 빌려주길 꺼리는 이유는 회수의 어려움 때문이다. 책을 빌려주는 것은 바보짓이고, 빌린 책을 돌려 달라는 것은 더 바보스럽지만, 빌린 책을 돌려주는 사람은 정말 바보라던가. 하지만 내가 책들의 방출을 회피하는 까닭은 바보가 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직업적 쓸모라는 현실적 측면이 더 크다. 어찌 된 게 내 품을 떠난 책은 반드시 써먹을 일이 생긴다.

에드먼드 월슨의 『핀란드역까지』(실천문학사)를 빌려 달라는 지인 한 분에게 대놓고 거절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좋은 수가 떠올랐다. 만에 하나 책을 잃어 버릴 위험을 덜 속셈으로 복제본을 만들어 선물하기로 했다. 『인물로 보는 혁명의 역사』로 제목을 바꾼 책도 현책방에서 조차 찾지 못한 데 따른 궁여지책이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바보가 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부담감을 느껴서다. 그건 바로 무단 복제의 부담이다.

하지만 『핀란드역까지』가 부끄러운 시절의 무단 번역물이기에 필자의 여린 마음을 안타까이

여길 독자가 계실지 모르겠다. 저작권을 죽은 개 취급하고, 저작권법을 동네북인 양 두들겨 대는 시류를 탈 줄 모르는 백면 서생으로 비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가 않다.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 하여 책을 번역하고 편집해 만든 정성까지 도매금으로 부정하는 것은 야멸차다. 그러는 것은 짐짓 저작권법은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저작권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다를 게 없다. 좀더 솔직하자. 저작권 위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도 불법 복제다.

### 저작권 감시 등급의 하향 조정

한동안 우리나라는 '불법 복제의 천국' 소리를 들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오명을 차츰 벗고 있다. 2005년 4월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서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USTR의 경계 등급이 한 단계 낮아졌다. USTR은 우리나라가 지난 1년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점을 평가해, 우리나라를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함께 35개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미 당국의 판단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순 없지만,

\* 출판평론가, robl@freechal.com

##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이를 우리 사회가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증거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아직도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사례 둘을 보자. 먼저, 얼마 전, 1998년 제31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아빠, 별이 살아있어요』(가람기획, 1998)라는 책이 일본 잡지의 현재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아마추어 천문가를 지은이로 하여 이 책은 일본 잡지 연재물의 주인공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글의 형식과 각종 수치 같은 것은 거의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한겨레>2005년 2월 19일자, 17면).

한편, 『다빈치 코드』를 베스트셀러 종합 1위 자리에서 밀어낸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 가지』(2004)를 폐낸 위즈덤하우스는 본문에 실린 글 일부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한바탕 곤욕을 치렸다. 그런데 표절 시비에 대응하는 두 출판사의 자세가 영 딴판이었다. 뒤늦게 표절 사실이 드러난 책의 저자와 발행인의 태도는 뻔뻔스럽기 짹이 없다.

### 출판사의 대조적인 대응

책의 지은이는 “잡지에 실린 일본 글이 너무 좋아 일반인용 교양서로 각색해 내자고 제안했던 가람기획 쪽에서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면 직접 지은 것처럼 표기하자고 해서 따랐던 것으로, 표절인 것은 분명하다”며 “책을 절판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독자일 것”이라고 말했고, 출판사 대표는 “책을 낸, ’98년 당시에는 저작권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지 않는 풍토였다”며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한가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한겨레>같은 날, 같은 면).

위즈덤하우스는 저작권자와 독점계약을 맺고 출간한 책이 무단 전용 논란에 휘말려 억울할 만도 하다. 아무개 지음이 아니라 ‘엮어 지음’이

나 ‘편저’로 표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기에 더욱 그럴 법하다. 하지만 출판사는 자신의 부주의를 공개 사과한다. 2005년 4월 23일자 중앙 일간지 출판면의 광고란에는 위즈덤하우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이 실렸다.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는 중국인 저자 탄쥐잉이 2003년 8월 중국에서 출간한 책으로, 내용의 일부분은 어려 곳에서 얻은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발췌,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책의 집필자를 ‘탄쥐잉 편저’로 하지 않고 ‘탄쥐잉 지음’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또한 인용한 글에 대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위즈덤하우스는 책의 표지와 내지에서 ‘지음’을 ‘편저’로 개정하고 일부 글의 출처를 밝힌 책을 다시 출간하였습니다. 단, 책의 내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위즈덤하우스를 믿고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또한 사과문은 “반성의 의미로” 이 책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기금으로 현납하기로” 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 개정 저작권법, 뭐가 문제인가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2005년 1월 16일에 즈음해 각 포털 사이트는 이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지사항을 내보냈다. 공지사항은 대체로 개정 저작권법이 “2004년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0월 16일 공포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음반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짧게 언급했다.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

가진다. [본조신설 2004. 10. 16]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  
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 10. 16]

부칙 [제7233호, 2004. 10. 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음악을 전송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전송'에는 모든 형태의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서 링크, 다운로드, 공유하는 행위와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등이 포함되며, "일기에 음악을 링크시키는 행위와 미니홈피에 음악을 넣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4월 26일 진보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문화연대 등을 중심으로 92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 견서'는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아이뉴스24([www.inews24.com](http://www.inews24.com))의 보도를 바탕으로 이를 살펴보면, 우선 시민단체는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한다. 저작권만을 강조해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개정 취지 설명 부족으로 신설된 저작권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새로운 권리 조항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탓에 법률로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공동의견서에서 조항별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제10조와 제18조는 저작자에게 '공중송신권'이라는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중송신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를 상대로 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규정한 제76조와 제83조는 웹캐스팅을 규제대상을 삼는다는 개정취지와 잘 맞지 않을뿐더러 비영리 인터넷 방송까지 불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정보 교환을 위

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설 단속반의 설치(제132조)에 반대하고, 도서 대여에 대한 보상 규정(제47조)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도서 대여 보상청구권의 신설로 도서대여점이 다수 폐점된다고 해도 도서대여점을 통해 대여되는 도서는 소장가치가 비교적 적으므로 이 조치가 도서 판매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대여업계와 저작자단체, 출판업계 간의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해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대중들이 도서대여점에서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정말 문제 있는가

이제는 개정 저작권법을 실행하는 주무 부처의 견해를 들을 순서다. 실제 법조문과 개정 취지가 담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작성한 문건을 통해 당국의 입장을 살펴본다. 문건은 문화관광부 웹사이트([www.mct.go.kr](http://www.mct.go.kr))에서 다운로드했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가 진다.

**제47조(도서 대여에 대한 보상)** ①제20조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쇄의 방법으로 발행된 도서를 대여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2조(상설단속반의 설치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

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방지를 위하여 상설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상설단속반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한 조문의 개정 취지에 의하면, '공중송신'은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 등 송신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으로" 신설한 개념이고, 제47조는 도서 대여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합법적 이익이 침해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인쇄의 방법으로 발행된 도서"에 한하여 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제76조와 제83조의 신설 배경은 디지털음성송신의 대표적인 예인 웹캐스팅을 할 때, 기존 음반을 사용하면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상설단속반의 설치 등에 관한 신설 조항은 저작권 침해물이 넘쳐 나고 있지만, 개별 권리자들이 일일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동 법 제137조(고소)의 규정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그런데 문건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한 저작권 위반의 친고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친고죄로 다루지 않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대만에서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일부 예외규정을 둔 반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는 완전 비친고죄다.

### 다섯 가지 단어 규칙

성글게나마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정부당국 양측의 주장과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저작권(법)을 비판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저작권(법) 비판자들의 여론 공세만 해도 그렇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이들의 선전 공세는 너무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듦다. 지면 제약상 신문을 통해 개진된 주장조차 꼼꼼하게 따져 볼 짐은 없으나, 저작권법을 국가보안법에 빗댄 진보네트워크사무국장의 비판은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다(<한겨레>1월 20일자). 하지만 이런 비판이 무리가 아니라는 신문사 논설위원 칼럼을 접하고선 할말을 잃었다(<한겨레>4월 20일자).

준거가 될 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끌어들이는 반론 방식이 달갑진 않지만 이번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 같다. 영국의 대학교에서는 논문이나 원고를 쓸 때 '다섯 가지 단어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 "원 저자의 문장을 인용할 때 원서 속의 인용문 속에 있는 명사나 동사를 5개 이상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 규칙을 어기면 표절로 간주할뿐더러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들 명사나 동사를 자신의 말로 바꾸어야 한다."(홍진옥, 「영국의 '웰빙」」, <한겨레>3월 28일자)

도서출판 이채에서 펴낸 『한국저작권법개설』(이하 『개설』)과 『매스미디어와 저작권』은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의 근작이다.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나왔지만 현실에 개입한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개설』은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하되 매체의 기술적 진보나 시대적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개념들을 주로 다루고자 했다"는 머리 말대로 원론에 가깝고, 저작권분쟁사례연구집인 『매스미디어와 저작권』은 실무 지침서의 성격이 짙다. 이 두 권은 저작권(법)의 분명한 개념과 그것의 적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